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5. 9 (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6. 22(목)

다. 상정일자 : 2006. 6. 22(목) 제12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6.22)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가. 제안이유

○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관령”을 면 명칭으로 삼아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 첫째로 높은 지명 인지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지리적 위치 설명을 쉽게 하고,
- 둘째로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심리적·심미적인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 셋째로 스키발상지 및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지명과 주민이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 넷째로 최근 판매기법의 한가지로 장소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상품화·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으로 발전시켜 지역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 마지막으로 “대관령”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 삼아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회 이후에도 대관령지역의 영예를 길이 간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제명 띄어쓰기와 2005.3.24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조례 별표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함. (안 제2조, 안 별표)

○ 부칙에서 다른 조례 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대표 지형인 "대관령"을 대관령을 포함하고 있는" 도암면"의 면 명칭을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높은 "대관령면"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2조 별표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조례 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하는 것임

나. 검토결과

○ "도암면"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인 "대관령면"으로 변경함으로써

- 지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스키와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대표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기여하고
- 모든 국민의 염원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대관령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강릉시로부터

- 대관령의 명칭은 강릉시에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띠고 있고, 지형적 요소를 보아 특정지역의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
- 또한「대관령은 두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전해야 할 곳으로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들어 명칭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 그러나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형이나 대표적인 명칭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 1980년 "묵호읍"과 "북평읍"을 합쳐 "동해시"로

· 1991년 경북 영동군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 2005년 충북 충주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이는 관할구역내에서 그 명칭을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한 것으로 우리군의 자치단체간 공유하고 있는 지형적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며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강릉시의회 등의 반대의견 제기와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조례효력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쟁송, 강릉시와의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공조 등을 고려할 때 이의 부분에 대한 처리 등

○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	○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강릉시의 소송 제기시에는 평창군이 입지와 충분한 논리, 명분 제시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

제출년월일 : 2006.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관령"을 면 명칭으로 삼아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첫째로 높은 지명 인지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지리적 위치설명을 쉽게 하고, 둘째로 대관령의 청정고원 이미지가 갖는 심리적·심미적인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셋째로 스키발상지 및 동계스포츠의 발상지로서의 지명과 주민이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넷째로 최근 판매기법의 한가지로 장소 이미지를 재창출하여 상품화·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시키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으로 발전시켜 지역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마지막으로 "대관령"을 동계올림픽 유치지역의 랜드 마크(landmark)로 삼아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회 이후에도 대관령지역의 영예를 길이 간직하기 위함에 있음.

2. 주요골자

가. 제명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제명 띄어쓰기와 2005.3.24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읍·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다. 조례 별표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함. **(안 제2조, 안 별표)**

라. 부칙에서 다른 조례 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관계법령 : 『별첨 2』

다. 예산조치 :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 26,000천원(각종 시설물, 대장정비 등)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6-69(2006.2.17 ~ 3. 9) 제출의견 있음(강릉시) ※ 『별첨 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강릉시 (2006. 4. 24)	○ 대관령 명칭은 강릉시에서도 지역의 상징성을 띠고 있으며 지형적 요소를 보아 특정지역의 독점물이 될 수 없음. 또한, 대관령은 두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전해야 할 곳으로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함.	○ "대관령" 명칭사용에 대해, 강릉시에서는 유·무형적 자산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공동자산이므로 이익 창출을 위해 상호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나,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향후 상호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평창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 "리의 명칭"을 "읍·면·리의 명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읍면명과 소재지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② 평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

③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도암보건지소"를 "대관령보건지소"로 하고, 위치 및 관할 구역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④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과 위치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⑤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과 위치란 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⑥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묘지의 명칭과 위치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⑦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구 역
평창읍	상 리	종래 상 리 일원
	중 리	종래 중 리 일원
	하 리	종래 하 리 일원
	천변리	종래 천변리 일원
	종부리	종래 종부리 일원
	노론리	종래 노론리 일원
	이곡리	종래 이곡리 일원
	조동리	종래 조동리 일원
	고길리	종래 고길리 일원
	지동리	종래 지동리 일원
	유동리	종래 유동리 일원
	약수리	종래 약수리 일원
	조둔리	종래 조둔리 일원
	천동리	종래 천동리 일원
	도돈리	종래 도돈리 일원
	마지리	종래 마지리 일원
	응암리	종래 응암리 일원
	대상리	종래 대상리 일원
	대하리	종래 대하리 일원
	입탄리	종래 입탄리 일원
	향동리	종래 향동리 일원
	여만리	종래 여만리 일원
	후평리	종래 후평리 일원
	주진리	종래 주진리 일원
	용항리	종래 용항리 일원
	임하리	종래 임하리 일원
	계장리	종래 계장리 일원
	다수리	종래 다수리 일원
	하일리	종래 하일리 일원
	원당리	종래 원당리 일원
	뇌운리	종래 뇌운리 일원

읍면명	리명칭	구 역
미탄면	창 리	종래 창 리 일원
	율 치 리	종래 율치리 일원
	회 동 리	종래 회동리 일원
	평 안 리	종래 평안리 일원
	백 운 리	종래 백운리 일원
	한 탄 리	종래 한탄리 일원
	기 화 리	종래 기화리 일원
	마 하 리	종래 마하리 일원
	수 청 리	종래 수청리 일원
방림면	방 림 리	종래 방림리 일원
	운 교 리	종래 운교리 일원
	계 촌 리	종래 계촌리 일원
대화면	대 화 리	종래 대화리 일원
	신 리	종래 신리중 自913번 止1000번, 自1001-1번 止1000-3번, 自1001의1번 止1001의8번, 自1006의1번 止1006-7번, 自1132의2번 止1132의3번, 1133의1번, 自1221번 止1458번, 1458의4번, 1459번, 自1459의1번 止1459의6번, 自1460번 止1463번, 自1463의1번 止1463의2번, 自1518번 止1701번, 1733번, 1735번, 1736번, 1736의1번, 1736의2번, 自1737번 止1743번, 산1의1번, 自산3번 止 산213번, 自산220번 止산225번, 산226-1번, 산226-2번, 산900번 일부, 산900의1번, 산1133의1번, 산1133의2번, 산1134의1번, 산1134의2번, 산1135의1번, 산1135의2번, 自산 1137번 止산 1151번, 自산 1176의1번 止산 1176의3번, 自산1177번 止산 1258번, 산 1260의1번, 1260의2번, 自산 1264번 止산 1405번, 산 1407번, 산1408번, 自산1410번 止산 1513번, 산 1513번 1번지를 제외한 일원

읍면명	리명칭	구 역
대화면	개 수 리	종래 개수리 일원
	상 안 미 리	종래 상안미리 일원
	하 안 미 리	종래 하안미리 일원
봉평면	창 동 리	종래 창동리 일원
	평 촌 리	종래 평촌리 일원
	유 포 리	종래 유포리 일원
	진 조 리	종래 진조리 일원
	면 온 리	종래 면온리 일원
	무 이 리	종래 무이리 일원
	흥 정 리	종래 흥정리 일원
	원 길 리	종래 원길리 일원
	덕 거 리	종래 덕거리 일원
용평면	용 전 리	종래 진부면 용전리 일원
	이 목 정 리	종래 진부면 이목정리 일원
	속 사 리	종래 진부면 속사리 일원
	노 동 리	종래 진부면 노동리 일원
	도 사 리	종래 진부면 도사리 일원
	백 옥 포 리	종래 봉평면 백옥포리 일원
	장 평 리	종래 봉평면 장평리 일원
	재 산 리	종래 대화면 신리중 自913번 止1000번, 自1001-1번 止1000-3번, 自1001의1번 止1001의8번, 自1006의1번 止1006-7번, 自1132의2번 止1132의3번, 1133의1번, 自1221번 止1458번, 1458의4번,1459번, 自1459의1번 止1459의6번, 自1460번 止1463번, 自1463의1번 止1463의2번, 自1518번 止1701번, 1733번, 1735번, 1736번, 1736의1번, 1736의2번, 自1737번 止1743번, 산1의1번, 自 산3번 止 산213번,自 산220번 止산225번, 산226-1번, 산226-2번, 산900번 일부,

읍면명	리명칭	구 역
용평면	재산리	산900의1번, 산1133의1번, 산1133의2번, 산1134의1번, 산1134의2번, 산1135의1번, 산1135의2번, 自산 1137번 止산 1151번, 自산 1176의1번 止산 1176의3번, 自산1177번 止산 1258번, 산 1260의1번, 1260의2번, 自산 1264번 止산 1405번, 산 1407번, 산1408번, 自산1410번 止산 1513번, 산 1513번 1번지 일원
진부면	하진부리	종래 하진부 일원
	상진부리	종래 상진부리 일원
	호명리	종래 호명리 일원
	송정리	종래 송정리 일원
	두일리	종래 두일리 일원
	척천리	종래 척천리 일원
	탑동리	종래 탑동리 일원
	동산리	종래 동산리 일원
	간평리	종래 간평리 일원
	상월오개리	종래 상월오개리 일원
	거문리	종래 거문리 일원
	신기리	종래 신기리 일원
	봉산리	종래 봉산리 일원
	마평리	종래 마평리 일원
	수항리	종래 수항리 일원
	화의리	종래 화의리 일원
	막동리	종래 막동리 일원
	장전리	종래 장전리 일원
대관령면	횡계리	종래 횡계리 일원
	차항리	종래 차항리 일원
	수하리	종래 수하리 일원
	용산리	종래 용산리 일원
	유천리	종래 유천리 일원
	병내리	종래 병내리 일원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평창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평창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읍·면·리의 명칭**---------- ----------.
제2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평창군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읍면명과 소재지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②평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 ③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도암보건지소"를 "대관령보건지소"로 하고, 위치 및 관할 구역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④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과 위치란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⑤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과 위치란 중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⑥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묘지의 명칭과 위치란의 "도암면"을 각각 "대관령면"으로 한다. ⑦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한다.

『별첨 2』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자치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①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할 때에는 法律로써 정하되, 市·郡 및 自治區의 管轄區域 境界變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를 廢置·分合하거나 그 名稱 또는 區域을 變更할 때에는 관계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이하 "地方議會"라 한다)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投票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③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面·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廢置·分合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④ 里의 區域은 自然의 村落을 기준으로 하되, 그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洞·里에 있어서는 行政能率과 住民便宜를 위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洞·里를 2개 이상의 洞·里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洞·里를 하나의 洞·里로 운영하는 등 行政運營上 洞·里(이하 "行政洞·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第5項의 行政洞·里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릉시"

강릉시
Gangneung City

강릉시

수신자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행정구역 명칭변경(도암면⇒대관령면)에 따른 의견 제출

1. 평창군 자치행정과-2759(2006.3.29) 호의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명칭변경(도암면⇒대관령면) 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의견서 1부. 끝.

결	부군수	(서명)		전	과 장	(서명)
일시	06.4.24. 시 분	번호	3603	재	담 당	(서명)
과	자치행정과	시행면		(공람)		

강릉시장 [강릉시장 인]

직원 임상술 시정담당 주영필 자치행정과장 김효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 2929 (2006. 4. 20) 접수 ( )

우 210-703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시청로66) / http://www.gangneung.gangwon.kr

전화 033-640-5437 /전송 033-640-4734 / @gangneung21.net / 공개

행정구역 명칭변경(도암면⇨대관령면)에 따른 의견

1. 강릉시의회 의견

□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개의 총연장이 13㎞, 고개의 굽이가 99개소에 이르는 곳으로 고개의 굽이가 모두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부터 우리 강릉시민들의 삶과 함께 하여 왔음

□ 또한, 최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뿌리인 대관령 국사성황당, 대관령박물관,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옛길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권내에도 "대관령" 명칭이 자주 사용하여 오는 등 "대관령"이라는 명칭은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음

□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도외시 한 채 대관령을 한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으로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강릉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것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반대함

2. 강릉문화원 의견

□ 대관령은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지형적인 요소만을 보더라도 어느 특정지역의 독점물로 볼 수 없음

□ 또한, 대관령이라는 명칭은 강릉지역 60여개의 초·중·고교의 교가와 강릉시민의 노래에 등장하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원류인 대관령 산신과 국사서낭신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강릉시민에게 있어서는 역사 문화적으로 정서가 깊은 산이며,

□ 전국적으로도 백두산, 금강산, 오대산 등 명산의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하는 예도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대관령도 강릉시와 평창군이 다함께 보호해야 할 신성한 산령이지,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므로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함

3. 강릉시 종합의견

□ 강릉시민의 대표기관인 강릉시의회와 강릉문화의 창달과 보존 그리고 연구하는 강릉문화원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 대관령은 두 지역이 서로 공유하고 함께 보전해야 할 곳으로 어느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이용 되는 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므로

□ 우리 강릉시에서도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함